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2-16
----------	-------

제안연월일 : 2022. 1. 2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인용 조문의 정비(안 제1조, 제14조, 제45조의2, 제55조의5, 제70조, 제79조)
- 나.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 신설(안 제6조의6)
- 다. 의안발의 정족수 개정(안 제18조)
- 라. 상위법령에 따른 표결방법 개정(안 제40조)
- 마. 상위법령에 따른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안 제47조)
- 바. 상위법령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관련 조항 신설(안 제55조의3~제55조의5)
- 사. 상위법령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안 제84조~제9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 나. 기타
 - 1) 개정규칙안: 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을 “5분의 1”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명 또는 무기명”을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법 제65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의5(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84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0장(제84조부터 제9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5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의장이 위촉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6조(제척과 회피) ①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7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

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9조(수당)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비밀유지)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2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84조 및 제85조를 각각 제92조 및 제9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p> <p>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p> <p>-----</p> <p>-----</p> <p>-----</p> <p>-----</p> <p>-----</p> <p>-----</p> <p>-----</p> <p>제6조의6(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제72조제1항 -----</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p> <p>-----</p> <p>-----</p> <p>-----</p> <p>----- 5분의 1 -----</p>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하며 위원회의 제출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 ④ (생략)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
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
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할 수 있다. <후단 신
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
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④ (생략)

제45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생
략)

② 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
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표결방법) ① -----

-----.

-----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
다.

② -----

-----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
명·무기명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 -----

-----.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55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

① -----
----- 주민-----

----- .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 설>

제55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신 설>

제85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의장이 위촉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6조(제척과 회피)

①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 설>

제87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

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8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9조(수당)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0조(비밀유지)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84조</u> (생 략)</p> <p><u>제85조</u>(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0장 보칙</u></p> <p><u>제92조</u> (현행 제84조와 같음)</p> <p><u>제93조</u>(현행 제85조와 같음)</p> <p><u>부칙</u></p> <p><u>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